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초안)

근린생활시설_DXF변환_샘플.isafe · 공사기간 2026-09-06 ~ 2027-11-28 · 생성 2026-09-07 · iSafe PLAN

계상 총액(원)
36,245,000

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입력하십시오. 아래 기본비중(%)도 수정 가능합니다.
계상 근거: 건축공사 · 총공사금액 2,000,000,000원 × 70% = 대상액 1,400,000,000원(제5조③ 대상액 미구분) · 고시 제2025-11호 별표 1 (5~50억: 2.28% + 4,325,000원)

안전·보건관리자 등 인건비

30 %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0 % · 안전보건진단비 등

2 % · 안전보건교육비 등

5 % · 기술지도비(재해

예방전문기관)

2 % · 본사 전담조직 임금

0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3 %

비목	근거 항목수	배분 기준	금액(원)	법적 근거
안전·보건관리자 등 인건비 †	15	기본비중 30%	10,873,50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안전시설비 등 †	248	트리 일정가중 47%	17,038,4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	기본비중 0%	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보호구 등 †	69	트리 일정가중 6.5%	2,372,4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안전보건진단비 등 †	2	기본비중 2%	724,90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안전보건교육비 등	—	기본비중 5%	1,812,25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45	트리 일정가중 4.4%	1,611,24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기술지도비(재해예방전문기관)	—	기본비중 2%	724,90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본사 전담조직 임금	—	기본비중 0%	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	기본비중 3%	1,087,35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합계	379		36,245,000	

※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지능형 감시장비 등)는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 공사부터 구입·임대비 100% 계상(2025년 계약분 70%). 착공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 배분 제외(공사비·관리행위 성격) 234건 — 안전관리비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월별 집행계획 (초안)

비목	26-09	26-10	26-11	26-12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안전·보건관리자 등 인건비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안전시설비 등	682	845	818	1,109	1,500	1,310	1,312	1,292	1,905	1,699	1,534	921	711	735	664
보호구 등	30	37	36	57	75	68	75	96	561	608	614	117			
안전보건진단비 등	40	50	48	50	50	45	50	48	50	48	50	50	48	50	45
안전보건교육비 등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30	37	36	37	37	33	37	52	377	426	427	84			
기술지도비(재해예방전문기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월별 단위: 천원 · schedule 비목은 해당 안전항목들의 일정 겹침일수 비례, 그 외는 공기 균등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각 호 · 위 고시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 1 — 공사종류 4분류 × 대상액 3구간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비목 분류 검토 표시 항목 포함 · 본 문서는 초안입니다. 확인 후 수정하십시오. · iSafe PLAN · ContiLab